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손 자 용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남부출장소를 설치코자 함

3. 주요내용

□ 남부출장소 설치

- 시행시기 : 2012. 1. 1.
- 관할구역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담당사무
 -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선5기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 북부출장소를 개칭한 후, 보은, 옥천 영동군을 관할하는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남부출장소는 2012년 1월 1일 개칭하며,
- 관할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의 3군으로 하고,
- 담당사무는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부출장소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출장소에 이어 보은, 영동, 옥천군을 관할할 남부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남부출장소 개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